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3

제출연월일 : 2002. 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사유

-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아, 주민의 세부담이 가중되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보완 하기위함.

주요골자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조정 (안 제28조)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안 제37조제2항)
-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안 제51조제2항)
- 신고한 농업소득 또는 신고하지 않은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안 제51조의2제1항)
-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결정(안 제51조의2제2항)
- 신고·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안 제51조의2제3항).

개정근거

-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549호 : 2001. 12. 29】
-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7447 호 : 2001. 12. 3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당해연도 6월16일부터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1조제1항중 “1월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 2(결정과 징수)

①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62조 제2항제3호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u>5월 1일</u>로 하고, 납기는 <u>당해연도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u>로 한다.</p>	<p>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u>6월 1일</u>----- -----<u>매년 7월16일 부터 7월31일</u>----- -----.</p>
<p>제37조(납세의무자) (생 략) <u>< 신 설 ></u></p>	<p>제37조(납세의무자) (현행과 같음) <u>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u> <u>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u> <u>2. 호주승계인</u> <u>3. 연장자</u></p>
<p>제51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u>1월 31일까지</u>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1조(신고와 납부) ① ----- ----- -----<u>5월 31일</u>----- ----- -----.</p>
<p>② (생 략) <u><신 설></u></p>	<p>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 2 (결정과 징수) ① 군수는 <u>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한다.</u></p>

